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03호 2021. 5. 12(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고 시

제2021-78호 거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3	3
제2021-79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11
제2021-81호 도로명주소 고시	13

공 고

제2021-696호 한시 생계지원사업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15
제2021-697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18
제2021-700호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주민 공모(제안)사업 공고	24
제2021-701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6
제2021-702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1
제2021-707호 제2021-707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47

거창군 고시 제2021-78호

거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231호(2021. 4. 29.)로 고시된 거창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결정(변경)된 거창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미래전략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7 .

거 창 군 수

1. 거창(거창일반산업단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대산지구)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총괄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지역	소 계	4,874,062	-	4,874,062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4,955	-	1,464,9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1,543	-	3,211,543	0.4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430	-	137,430	0.02	-
	준주거지역	60,134	-	60,134	0.01	-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 계	1,267,345	-	1,267,3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38,903	-	1,238,9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
녹지지역	소 계	25,417,317	-	25,417,317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3,291	-	7,713,29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9,266	-	16,049,266	1.99	-
관리지역	소 계	261,932,627	-	261,932,627	32.57	-
	관리지역	-	-	-	-	-
	보전관리지역	171,843,404	-	171,843,404	21.37	-
	생산관리지역	8,213,818	-	8,213,818	1.02	-
	계획관리지역	81,875,405	-	81,875,405	10.18	-
농림지역	469,363,666	-	469,363,666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2,125	-	40,942,125	5.09	-	
미지정	-	-	-	-	-	

※ 기정 면적은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임(경상남도 고시 제2012-386호, 012.09.13)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740,753.7	100.0	-
일반공업지역	656,359.5	88.6	-
준공업지역	28,441.6	3.8	-
자연녹지지역	55,952.6	7.6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대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740,753.7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결정 총괄 조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	4,725	83,479.0	2	2,537	54,036.3	4	1,362	21,859.4	4	826	7,583.3
중로	9	4,383	82,087.4	2	2,537	54,036.3	4	1,362	21,859.4	3	484	6,191.7
소로	1	342	1,391.6	-	-	-	-	-	-	1	342	1,391.6

※ 도로 면적은 교차부 및 가각면적 포함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6	20	주간선 도로	2,396	지구계 동측	지구계 동측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1	53	23	보조간선 도로	203	중로1-50 중점부	중로1-46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 14.06.09	구역내 :141m
기정	중로	2	36	15	보조간선 도로	605	중로1-46	중로1-46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2	37	15	보조간선 도로	304	중로1-46	중로2-36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2	38	15	보조간선 도로	148	중로1-46	중로2-36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2	39	15	보조간선 도로	305	중로1-46	중로2-36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3	46	12	집산도로	150	중로1-46	중로2-36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3	47	12	집산도로	230	중로2-36	중로2-37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중로	3	48	12	집산도로	104	중로1-46	중계펌프장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기정	소로	3	102	4	국지도로	342	지구계 북측	지구계 북측	일반 도로	-	경상남도 고시 ' 09.04.16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1564번지	4,387.3	-	4,387.3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기정	8	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1603번지	3,105.3	-	3,105.3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다)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남상면 대산리 1562번지 일원	55,952.6	-	55,952.6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기정	20	소공원	소공원	남상면 대산리 1605번지	2,004.6	-	2,004.6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라)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후	변경	변경후		
기정	11	녹 지	완충 녹지	남상면 대산리 1606번지 일원	2,113.2	-	2,113.2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기정	12	녹 지	완충 녹지	남상면 대산리 1609번지 일원	65,421.6	-	65,421.6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기정	13	녹 지	완충 녹지	남상면 대산리 1612번지 일원	2,663.1	-	2,663.1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기정	14	녹 지	완충 녹지	남상면 대산리 1624번지	891.7	-	891.7	경상남도 고시 ' 09. 04. 16	-
기정	33	녹 지	완충 녹지	남상면 대산리 1549번지	939.0	-	939.0	-	-

마)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남상면 대산리 1549번지	2,835.2	-	2,835.2	경상남도 고시 ' 12. 09. 13	-

바)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도수시설 (가압장)	남상면 대산리 1600번지	896.4	-	896.4	경상남도 고시 '09. 04. 16	-

사) 우수지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1601번지	5,348.4	-	5,348.4	경상남도 고시 '09. 04. 16	-
기정	2	우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1598번지	8,660.8	-	8,660.8	경상남도 고시 '09. 04. 16	-

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남상면 대산리 1550번지	13,747.0	-	13,747.0	경상남도 고시 '09. 04. 16	-

자)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맨홀 펌프장	남상면 대산리 1545번지	127.9	-	127.9	경상남도 고시 '09. 04. 16	-
기정	1	중계 펌프장	남상면 대산리 1592번지	1,638.0	-	1,638.0	경상남도 고시 '10. 10. 14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합 계		740,753.7	-	-	740,753.7	-
소 계		585,246.1	-	-	585,246.1	-
-	I	184,536.8	I-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4번지	6,278.6	-
			I-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3번지	8,264.9	
			I-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2번지	6,612.0	
			I-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1번지 일원	45,285.1	
			I-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6번지	6,611.6	
			I-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6-1번지	4,861.8	
			I-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7번지	14,442.2	
			I-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8번지	6,612.2	
			I-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51번지	9,685.3	
			I-1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54번지 일원	24,133.2	
			I-1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5번지	127.9	
			I-1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9번지	2,835.2	
			I-1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50번지	13,747.0	
			I-1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4-1번지	1,983.5	
			I-1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2번지	16,529.0	
			I-1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2번지	9,915.4	
			I-1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56번지	6,611.9	
	II	78,542.7	II-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57번지	3,306.1	
			II-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0번지 일원	14,896.7	
			II-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2번지 일원	55,952.6	
			II-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4번지	4,387.3	
	III	32,185.4	III-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6번지	32,185.4	
	IV	10,955.4	IV-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5번지 일원	10,955.4	
	V	11,022.9	V-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7번지 일원	11,022.9	
	VI	42,455.7	VI-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0번지 일원	25,924.1	
			VI-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번지	16,531.6	
	VII	42,492.8	VII-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6번지 일원	42,492.8	
	VIII	40,059.0	VIII-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87번지 일원	40,059.0	
	IX	142,995.4	IX-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9번지 일원	37,994.7	
			IX-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602번지	40,489.2	
			IX-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6번지 일원	23,836.0	
			IX-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3번지 일원	19,022.0	
			IX-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601번지	5,348.4	
IX-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600번지	896.4		
IX-7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603번지	3,105.3		
IX-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605번지	2,004.6		
IX-9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8번지	8,660.8		
IX-10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2번지	1,638.0		
도로	83,479.0	-	-	83,479.0	-	
완충녹지	72,028.6	녹-1	-	2,113.2	-	
		녹-2	-	65,421.6	-	
		녹-3	-	2,663.1	-	
		녹-4	-	891.7	-	
		녹-5	-	939.0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 기 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내 용	
-	I ~ III VI ~ IX	허용 용도	I-3, I-16, III-1, IX-1, VII-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C10)
			IX-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섬유제품 제조업(C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I-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I-5, I-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I-9, IX-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 금속 제조업(C24)
			I-1, II-1, IX-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I-4, I-8, I-10, II-2, VI-1, VII-1, VIII-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IX-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I-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제품 제조업(C33)
			I-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 금속 제조업(C24)
			I-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C10)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I-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내 용		
-	I ~ III VI ~ IX	허용 용도	I-2, I-3, I-16, III-1, IX-1, VII-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C10)	
			IX-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섬유제품 제조업(C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I-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I-5, I-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I-9, IX-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 금속 제조업(C24)	
			I-1, II-1, IX-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I-4, I-8, I-10, II-2, VI-1, VII-1, VIII-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IX-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I-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 금속 제조업(C24)	
			I-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C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I-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L6811)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나) 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VI	허용용도	VI-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연구개발업(M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다)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IV, V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의 군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단독주택, 공동주택(단, 기숙사 제외), 장례식장,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이하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	I ~ III, VI-1, VII~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설용지내 도입되는 시설에 따라 분할합병 가능 최소대지 분할 면적 : 1,650㎡이상 	산업시설용지
-	VI-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용지내 도입되는 시설에 따라 분할합병 가능 	연구시설용지
-	I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시설용지는 도입되는 시설의 필요규모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 대지 분할 최소면적 : 300㎡ 	지원시설용지
	V-1		

5. 지형도면 : 실읍생략(거창군 미래전략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미래전략과(☎055-940-3363)로 문의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7일

거창군수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고방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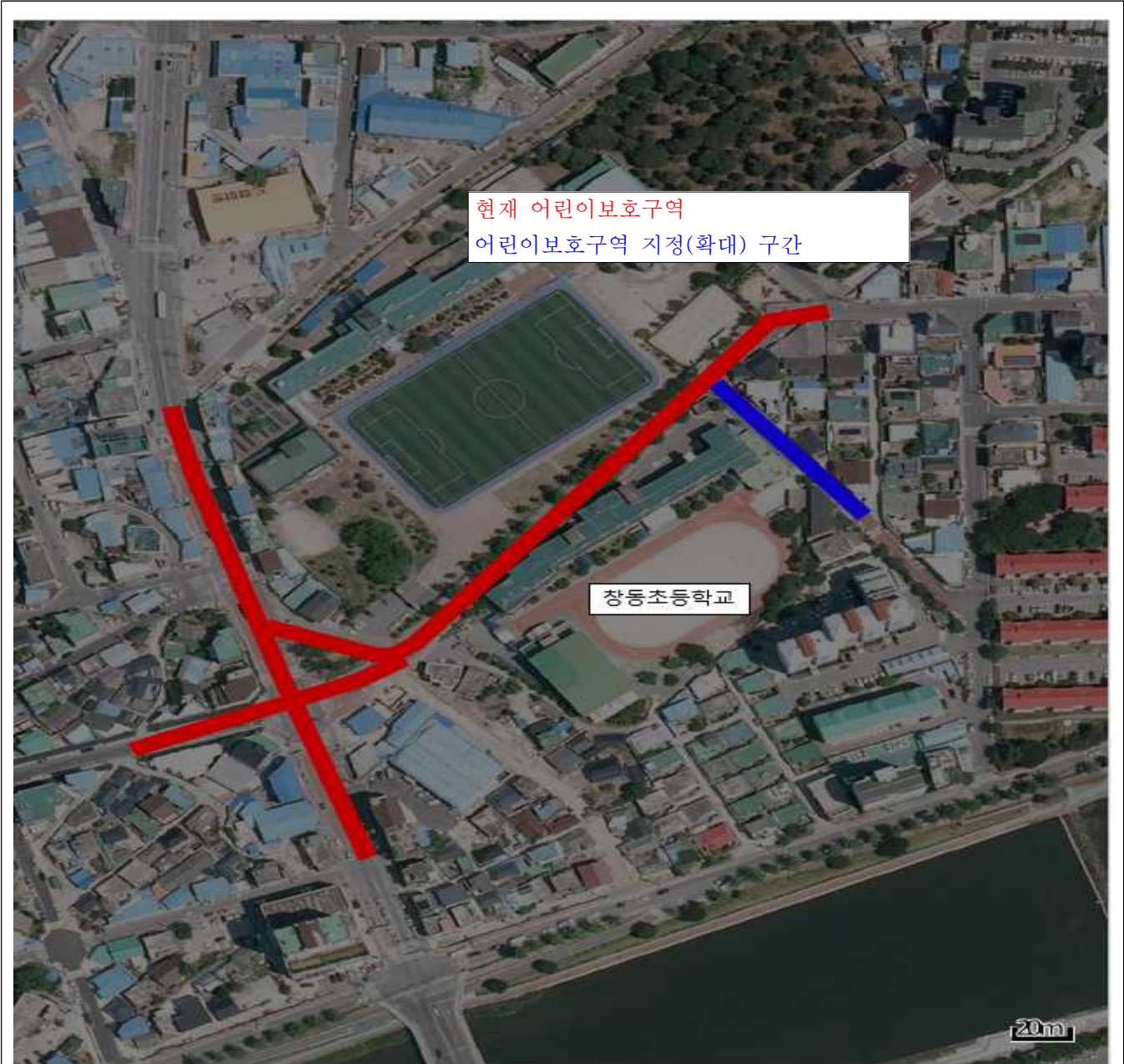
시설명	주소	보호구역 지정(확대)구간	비고
창동초등학교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00-2	대동리 99-36일원(L= 100m)	확대

※ 붙임 : 보호구역범위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

【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치



거창중학교 ~ 노벨선교어린이집 L=100m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2.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행로 224-84 등 6건
- 폐지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04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행로 224-84	20210512	20090702	행정구역명(월포+행정) 반영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3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170-19	20210512	20090702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1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길 329-26	20210512	20090401	모곡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행정구역명 동변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359-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물안실길 9	20210512	20090401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이 많을 다자 모양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41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용초길 119-103	20210512	20090401	용호동과 성초동 두 마을을 어울려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산42-8, 4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10	20210512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63-8	20210512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폐지	

한시 생계지원사업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2021년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근무할 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복지정책과	한시 생계지원사업 단시간근로자	15명	한시 생계지원사업 업무 추진 (읍면사무소 근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 성 별 :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라.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마. 우대요건 : 재난지원금 업무추진 유경험자,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3. 근무조건

- 가. 신 분 : 단시간근로자
- 나. 채용기간 : 2021. 5. 17. ~ 6. 15.(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보 수 : 시간당 8,720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 바. 근무장소 : 전 읍면사무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심사

-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확인
-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및 직무관련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등 심사

※ 신속한 채용을 위해 면접절차 생략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1. 5. 6.(목) ~ 5. 11.(화) / 6일간
- 2) 원서접수 : 2021. 5. 10.(월) ~ 5. 11.(화) / 2일간
 -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 1층 복지정책과(평일 근무시간 내)
 -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심사 : 2021. 5. 12.(수)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13.(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1) 근무개시(예정)일 : 2021. 5. 17.(월) 예정
-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부착)
- 나. 이력서 1부
- 다. 자기소개서 1부
- 라. 해당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 마.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 변동내역)
- 바.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 채용에 관한 사항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940-3090)로 문의 바랍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거창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거창군수

1. 추가 모집인원 : 15명

(단위: 명)

구분	모집인원	선발기준										
청년	6명 * 성별 구분없이 선발	- 대 상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1975. 5. 7. ~ 2002. 5. 6 출생자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 - 연령대별 선발인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20대</th> <th>30대</th> <th>40대</th> </tr> </thead> <tbody> <tr> <td>모집인원</td> <td>6명</td> <td>3명</td> <td>2명</td> <td>1명</td> </tr> </tbody> </table>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모집인원	6명	3명	2명	1명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모집인원	6명	3명	2명	1명								
사회적 약자	2명 * 성별 구분없이 선발	- 대 상 :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서에 반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체크된 사람에 한해 요건 검증)										
일반	7명	- 대 상 : 청년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 응모하지 아니한 사람 중 선발 ※ 청년, 사회적 약자 응모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위원 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선발함										

2.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거창군민, 거창군 소재 직장인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거창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거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응모자격의 제한

-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② 거창군 위원회에 4개 이상 위촉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3. 제출서류 <거창군 홈페이지-군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1부
- 자격요건 등 검증 동의서 1부
- 경력과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거창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중 관내 소재 기관,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에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 5. 6. ~ 5. 31.(26일간)
- 접수처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 문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2층) 예산담당
- 우 편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이 메 일 : dlwhdthq@korea.kr
- 팩 스 : 055-940-3029

☞ 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근무시간: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접수여부 유선(055-940-3053) 확인

6. 선정기준

- 응모 신청자가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 시 그대로 선정함
- 응모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 추천하여 선발함
- 청년 위원의 경우 연령대별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높은 연령대에서 후보자가 있을 경우 선발하고, 전체 응모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발함
- 사회적약자 위원의 경우, 모집인원 미달 시 일반위원 후보자 중에서 선발함
- 청년 및 사회적 약자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기존위원회*의 남녀 위원수와 합산하였을 때, 특정성별이 다수인원이 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위원 후보자 중 미달하는 성별에서 선발함

*기존 위원회 현황

구 분	위촉직			당연직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인원수	10	5	5	5	5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응모자가 모집인원 대비 적을 경우 성별은 고려하지 않음

7.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적합여부 검토, 대상 구분
-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당일 본인 추첨, 불참시 대리 추첨)

8. 선정자 발표 : 2021. 6. 9.(예정) /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임기 : 2년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활동실적 등 참고)

10. 주민참여예산위원 역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 제시, 제도 운영결과 평가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분과위원회 활동 등)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기타 참고사항

-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회의 참석 시 회의 수당 지급(무보수 명예직)
- 선정된 위원은 향후 거창군 예산학교 과정을 필히 수료하여야 함
- 공개 추천시 응모자가 추천하되 접수 순서대로 추천함(우선 추천자가 모집인원에 모두 선발될 경우 추천 종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수와 관련하여 미달하는 성별을 일반 대상에서 선발할 경우 남녀 대상자를 구분하여 추천함에 넣은 후 해당 성별에서만 추천(우선 추천자가 모집인원에 모두 선발될 경우 추천 종료)
-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문의(☎ 055-940-3053)

붙임 1

[접수번호 : (접수일시 : 2021. . .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한자)	E-mail		
주 소	자택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기재 우편번호()		
	근무처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는 소재한 기관 또는 근무지 주소 기재 우편번호()		
연락처	휴대폰)	자택)	직장)	
직업	※ 현 근무지, 직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신청동기	※ 근무경력, 활동내역 등 주요내용으로 요약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활동사항 자기소개서에 별도작성)			
사회적 약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기획보건사업소	행정복지	경제산업	농업
	※ 참여 희망분과 해당 칸에 1지망, 2지망 표기(희망을 우선하되, 임의 배정될 수 있음)			
거창군 내 위원회 소속 확인	소속 위원회명			
	거창군 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사실이 확인 될 시 위촉을 취소함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조례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거창군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본인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1. . . .

신청인 : (서명)

거창군 수귀하

자격요건 등 검증 동의서

본인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자로서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위원 자격요건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조회)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개인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비 동의시 위원신청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수집·이용목적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수집·활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직위, 연락처(주택, 직장, 휴대전화, e-mail), 사회적 약자 여부, 참여희망분과,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신청동기 및 다짐 등
- 보유·이용기간 : 위원 응모신청일로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2021.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 .

거창군수 귀하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주민 공모(제안)사업 공고

거창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사업제안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6일

거창군수

1. 공모명 :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2. 공모규모 : 총16억 원

구분	사업내용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5억 원)	- 1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천만 원 이내 -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신청자격 : 전 군민(공무원 포함)
청년주도형 참여사업 (5억 원)	- 1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천만 원 이내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군 자체의 청년을 위한 사업 - 신청자격 : 전 군민(공무원 포함)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6억 원)	- 5천만 원 이내(읍·면별 실링* : 5천만 원) *실링액은 경남도 주민자치형 사업 준비 매칭액이 포함된 금액임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 - 사업제안 : (11개 면)주민자치회, (거창읍)지역회의

3. 대상사업 : 거창군내 시행가능사업(타 기관사무, 국가사무 제외)

4. 제외사업

- ✓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 ✓ 국고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
-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 또는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 ✓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낭비적 성격의 행사·축제성 사업 등
- ✓ 민간이전 경비(보조금)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

5. 공모기간 : 2021. 5. 6. ~ 6. 24. (50일간)

6. 신청자격 : 거창군민, 단체

7. 참여방법 : 사업제안 신청서 제출

-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군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 우 편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방 문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읍·면사무소

※ ‘지역주도형 자치사업’은 읍·면 주민자치회 및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발굴

8. 문 의 처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및 우리군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사용의 예약,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제3항)
- 나. 사용자 취소와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6조제항)
- 다. 시설예약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7조)
- 라. 예약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조)
- 마.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9조)
- 바.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 사. 산림치유프로그램 기준과 요금을 조정(안 별표1)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5. 6. ~ 2021. 5.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산림과

- 전화번호 : 055)940-7932

- FAX : 055)940-7939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조 제목 “입장료 등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의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숙박시설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거창군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약의 취소 등)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힐링랜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
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탁 관리·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구분	요금	적용
일반	3,000원	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u>2시간 30분 내외</u>	<u>어른: 10,000원</u> <u>청소년·어린이: 5,000원</u>

[별표 3]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			

비고

-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말한다.
- 다.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마.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입실 당일 힐링랜드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②(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입장료 등 반환) 1. ~ 2. (생 략) 3. <u>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입장료 등 <u>감면</u>)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p> <p>제6조(입장료 등 반환) 1. ~ 2. (현행과 같음) 3.<삭 제></p> <p><u>제7조(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숙박시설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거창군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8조(예약의 취소 등)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u></p> <p><u>제9조(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② 군수는 힐링랜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게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탁 관리·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p> <p>1. (생략) 2. 체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요금</th> </tr> </thead> <tbody> <tr> <td>산림치유센터</td> <td>30분</td> <td>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td> </tr> <tr> <td>산림치유 프로그램</td> <td colspan="2">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p>[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 2. 체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요금</th> </tr> </thead> <tbody> <tr> <td>산림치유센터</td> <td>30분</td> <td>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td> </tr> <tr> <td>산림치유 프로그램</td> <td>2시간 30분내외</td> <td>어른: 10,000원 청소년·어린이: 5,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2시간 30분내외	어른: 10,000원 청소년·어린이: 5,000원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2시간 30분내외	어른: 10,000원 청소년·어린이: 5,000원																				
<p><신 설></p>	<p>[별표 3]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사용료 감면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감면대상</th> <th>기준</th> <th>감면요율</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숲속의집, 산림휴양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td> <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요금의 50% 할인</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비수기 주중에 한함</td> </tr> <tr> <td>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 <td>요금의 30% 할인</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국가보훈 대상자</td> <td>1~3급</td> <td>요금의 50% 할인</td> </tr> <tr> <td>4~7급</td> <td>요금의 30% 할인</td> </tr> <tr> <td></td> <td>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금의 30% 할인</td> </tr> </tbody> </table> <p>비고</p> <p>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p> <p>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p> <p>다.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라.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p> <p>마.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p> <p>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p> <p>※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입실 당일 힐링랜드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 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30% 할인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 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1가정 1실에 한정함)	요금의 30% 할인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 2. 21.>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20. 2. 1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소비자 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0. 11.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고
<p>2) 성수기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p>3) 비수기 주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p>4) 비수기 주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숙박업 (3-3)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50% 감경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휴양관, 숲속의 집 준공에 따른 숙박시설 등 운영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 입실시간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2호)

1) 현행)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2) 변경)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나. 월요일 휴관일을 변경하는 예외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항1호)

1) 현행)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변경)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다. 시설사용의 예약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7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5. 6. ~ 2021. 5.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산림과

- 전화번호 : 055)940-7932

- FAX : 055)940-7939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제4조제1항제1호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경우에 예약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입증하게 하여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입장시간 등)</p> <p>① (생 략)</p> <p>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p> <p>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그날 15시부터 다음날 <u>12시</u>까지</p> <p>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p> <p>② (생 략)</p> <p>제4조(휴관일)</p> <p>① (생 략)</p> <p>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p> <p>2. (생 략)</p> <p>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입장시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p> <p>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그날 15시부터 다음날 <u>11시</u>까지</p> <p>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휴관일)</p> <p>① (현행과 같음)</p> <p>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u>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u>),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u>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u></p> <p>③ <u>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경우에 예약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입증하게 하여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u></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 군정조정위원회 불필요한 심의절차 사항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 군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및 기능 정비
- 서면심의 근거 신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

4. 예고기간 : 2021. 5. 7.(금) ~ 5. 27.(목)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라. 전화 055-940-303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sarangbi@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기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기존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기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회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

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8조·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채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2조(구성) ①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삭 제>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4. (생략)

5.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기타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⑥ (생략)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그 밖에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명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위천 황산(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위천면 황산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위천 황산(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1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위천 황산(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656m, B=6.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73-11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면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²)	(m ²)						
	합계			125,112	4,121						
1	위천면 황산리	173-11	답	2,503	4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	위천면 황산리	173-10	답	1,285	20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72	유*수				
3	위천면 황산리	173-9	답	2,203	2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2길 29	신*범				
4	위천면 황산리	173-8	답	3,37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06,105동 2701호 (대치동,동부센트레빌)	이*향				
5	위천면 황산리	200-1	임	549	100		오*복				
6	위천면 황산리	산25	임	82,282	79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91	초계정씨생원공종중				
7	위천면 황산리	205-6	전	136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51	임*영				
8	위천면 황산리	205-5	전	658	31	거창읍 강양5길 49	박*준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읍 수남로 2241	근저당	
9	위천면 황산리	205-3	전	700	8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451	임*영				
10	위천면 황산리	118-1	도	2,129	179		거창군				
11	위천면 황산리	874-6	도	1,682	61		국(건설부)				
12	위천면 황산리	710	구	16,198	83		국(농림수산부)				
13	위천면 황산리	173-12	도	739	690		거창군				
14	위천면 황산리	184	도	1,038	965		국(농림수산부)				
15	위천면 황산리	185	구	807	246		국(농림수산부)				
16	위천면 황산리	648	구	3,943	340		국(농림수산부)				
17	위천면 황산리	874	구	2,005	324		국(건설부)				
18	위천면 황산리	산25-2	도	167	17		거창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면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내용	
				(m ²)	(m ²)						
19	위천면 황산리	171-15	도	58	8		거창군				
20	위천면 황산리	171-14	도	100	20		거창군				
21	위천면 황산리	201-2	도	210	121		거창군				
22	위천면 황산리	201-1	천	104	104		신*구				
23	위천면 황산리	202-1	구	30	20		거창군				
24	위천면 황산리	878	도	1,814	377		국 (농림수산부)				
25	위천면 황산리	205-1	도	395	157		거창군				

**고제 내당(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고제 내당(리도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고제 내당(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710m, B=6.5m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0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²)	(m ²)						
	합계			90,161	6,387						
1	고제면 봉계리	1470	도	1,157	341	-	국 (국토교통부)				
2	고제면 봉계리	372-2	도	294	53	-	거창군				
3	고제면 봉계리	372-3	임	172	42	봉산리	변*규				
4	고제면 봉계리	166-7	임	58	39	-	거창군				
5	고제면 봉계리	166-3	도	7	7	-	거창군				
6	고제면 봉계리	201-2	도	473	459	-	거창군				
7	고제면 봉계리	204-2	도	13	13	-	거창군				
8	고제면 봉계리	204-1	전	916	4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46-3 성우아파트 비-202	양*용				
9	고제면 봉계리	166-5	임	674	23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46-3 성우아파트 비-202	양*용				
10	고제면 봉계리	166-2	도	7	5	-	거창군				
11	고제면 봉계리	202-2	전	1,015	72	거창읍 가지리 539	이*원 외 1인				
12	고제면 봉계리	170-5	도	53	40	-	거창군				
13	고제면 봉계리	205-1	임	6,033	1	부산광역시 동구 성북로36번길 1 (범일동)	김*년				
14	고제면 봉계리	170-4	전	3,091	5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06	신*덕				
15	고제면 봉계리	201-3	전	1,537	88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산14-1 엄궁아파트 7-510	이*훈				
16	고제면 봉계리	201-1	전	26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산14-1 엄궁아파트 7-510	이*훈				
17	고제면 봉계리	198-2	도	145	145	거창읍 중앙리 38-4	백*인				
18	고제면 봉계리	198-1	전	182	5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100-14	이*남				
19	고제면 봉계리	197-1	전	132	39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09-3	전*권				
20	고제면 봉계리	197-2	도	116	123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09-3	전*권				
21	고제면 봉계리	197-3	전	443	37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100-14	이*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내용
				(m ²)	(m ²)						
22	고제면 봉계리	195-5	잡	1,368	12	전라북도전주시완진구영 경1길25,102동1506호 (중화신동2가,무성근영타 운)	김*실				
23	고제면 봉계리	195-2	임	450	121	대구광역시동구올하동로6 7,207동303호 (올하동,올하뜨란채)	박*근				
24	고제면 봉계리	195-1	잡	1,264	12	대구광역시동구올하동로6 7,207동303호 (올하동,올하뜨란채)	박*근				
25	고제면 봉계리	195-4	잡	1,387	47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30길 37(중동)	박*영				
26	고제면 봉계리	196-5	답	13	3	-	하*산				
27	고제면 봉계리	183-1	답	1,944	20	336	하*욱				
28	고제면 봉계리	183-2	도	17	17	-	거창군				
29	고제면 봉계리	196-3	도	489	489	-	거창군				
30	고제면 봉계리	196-4	답	707	89	-	하*산				
31	고제면 봉계리	196-1	답	364	175	262	김*수				
32	고제면 봉계리	196-7	답	2,043	4	경기도파주시책향기로371 607동703호 (동패동,숲속길마을동문굿 모닝힐)	하*연				
33	고제면 봉계리	196-2	답	489	35	경기도파주시책향기로371 607동703호 (동패동,숲속길마을동문굿 모닝힐)	하*연				
34	고제면 봉계리	185-15	도	633	320	-	거창군				
35	고제면 봉계리	185-18	임	417	40	-	거창군				
36	고제면 봉계리	185-10	도	311	47	-	거창군				
37	고제면 봉계리	185-9	전	545	5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4	하*순				
38	고제면 봉계리	185-22	임	128	1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4	하*순				
39	고제면 봉계리	187-2	창	670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7	조*오				
40	고제면 봉계리	187-3	전	1,220	28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7	조*오				
41	고제면 봉계리	1468	도	264	201	-	국 (국토교통부)				
42	고제면 봉계리	185	전	873	206	323	하*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²)	(m ²)						
43	고제면 봉계리	185-7	임	1,988	37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 동리97 주공아파트103-506	박*순				
44	고제면 봉계리	186	전	754	117	거창읍 대동리 88-54	김*규				
45	고제면 봉계리	185-14	임	225	138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관 로57,606동1004호 (삼산동,삼산타운)	하*기				
46	고제면 봉계리	185-13	과	5,575	67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관 로57,606동1004호 (삼산동,삼산타운)	하*기				
47	고제면 봉계리	185-6	임	848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4	하*순				
48	고제면 봉계리	185-3	임	258	2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4	하*순				
49	고제면 봉계리	185-20	과	7,790	17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	문*선				
50	고제면 봉계리	185-19	전	841	4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	문*선				
51	고제면 봉계리	185-2	임	877	4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	문*선				
52	고제면 봉계리	185-1	임	2,079	1,05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88	문*선				
53	고제면 봉계리	산121-2	도	5,157	140	경상북도 김천군 김천읍 본정	이*복				
54	고제면 봉계리	산122-2	도	595	11	경상북도 김천군 김천읍 본정	이*복				
55	고제면 봉계리	산122-1	임	397	192	거창읍 하동 250	조*행				
56	고제면 봉계리	산121-8	도	2,965	132	-	경상남도				
57	고제면 봉계리	산243	천	16,223	170	-	국 (국토교통부)				
58	고제면 봉계리	산129-2	도	298	3	봉산리	이*혁				
59	고제면 봉계리	550-4	도	1,786	67	-	경상남도				
60	고제면 봉계리	1459	도	2,093	45	-	국 (국토교통부)				
61	고제면 봉계리	산130-7	도	2,809	114	-	경상남도				
62	고제면 봉계리	산130-2	도	4,463	183	-	하*식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천적생태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해당하는 규제정비(안 제6조제2항, 제10조)

나.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제1항·별표 2)

- 1)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 2)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다. 법령 중복·재기재 삭제(안 제12조~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2. ~ 2021. 5. 26.(14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 전화번호 : 055)940-8202

- FAX : 055)940-8179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을 “거함대로 3372-60”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u>정장리 819-10번지 일원</u>에 둔다.</u></p> <p><u>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u>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 <u>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u> <u>④ <u>당일</u>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u></p> <p><u>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u> <u>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u></p>	<p><u>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u>거합대로 3372-60</u>에 둔다.</u></p> <p><u>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 1</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u>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 <u>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u> <u>④ <u>그날</u>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u></p> <p><u>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별표 2</u>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현 행	개정안
<p>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p> <p>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p> <p>4.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p> <p>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p> <p>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p> <p>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8.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p> <p>9.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p> <p>10.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p>	<p>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삭 제></p>

[별표 2] <신 설>

관람료 면제기준(제7조제1항관련)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6.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17.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 설립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월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함(안 제6조제2항·부칙)

- 1) 감면조건 :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중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
- 2) 감면대상 : 체육시설, 수송대 썰매장·야영장·오토캠핑장, 공영주차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주차장
- 3) 감 면 율 : 100분의 50

4. 예고기간 : 2021. 5. 12.(수) ~ 5. 26.(수)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다. 우편번호 : 51032, 전화 / 팩스 : 055-940-3092 / 3089

이메일 : tjdg1220@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입법예고문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일자	2021. 5. .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라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함(안 제6조제2항·부칙)

- 1) 감면조건 :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중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
- 2) 감면대상 : 체육시설, 수승대 썰매장·야영장·오토캠핑장, 공영주차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주차장
- 3) 감면율: 100분의 5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제11조
- 2)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 2021. 5. 12.~5. 26.
 - 나) 예고결과 :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 제목 “(자원봉사단체 지원)” 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경대상	감경률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②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④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호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별표 4 중 제2호 감면율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u>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u> 2. <u>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u>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제 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2건)
 - 가. 2021. 4. 3.(토) : 거창읍 대평8길 **번지 주택 내 14명 모임
 - 나. 2021. 4.14.(수) : 거창읍 죽전길 ***-**번지 주택 내 11명 모임
3. 관계법령
 - 가. 위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나. 과태료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21. 5. 10. ~ 2021. 5. 24.(14일간)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대 상 자

성 명	기본주소	예정된 처분	비 고
박*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	과태료 부과 10만원 (2건)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금액 20% 감경

7. 의견제출
 - 가. 제출처 : 거창군 보건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나. 연락처 : 감염병대응담당 ☎055)940-7902, FAX 055)940-8309
8. 유의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본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등 문의사항은 거창군 보건소(☎055-940-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